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[ ] (중앙·지역)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
[ ]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
[ ] 수소안전전담기관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7일

신청인	기관 명칭	사업자등록번호
	지정번호	전화번호
	소재지(우편번호:)	

재발급
신청사유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, 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(중앙·지역)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, 수소유통전담기관 또는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. 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	수수료 없음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지정서 작성	→	발급
신청인				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